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6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11. 3.(목) 14:1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김석진 상임위원 (1인)

제6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1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6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지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10월 25일에 있었던 제59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11월 2일 있었던 제60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의결사항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16-61-22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티브로드 중부방송, (주)딜라이브 우리케이블티브이 및 제이씨엔올산중앙방송(주) 재허가에 대해 재무건전성 악화 방지, 방송의 공익성 강화 등을 위해 미래부의 재허가 조건과 함께 아래의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허가에 동의한다’입니다. 재허가 조건을 보고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은 3사에 대해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지역채널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입니다. 제이씨엔올산중앙방송(주)에 대해서는 별도로 2가지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의 제작 및 편성이 저조하므로 재허가일 이후 3개월 이내에 3년간의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부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둘째, 재무구조의 안전성이 취약하므로 재허가 이후 3년간의 구체적인 부채감축 방안을 작성하여 재허가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미래부에 제출하고 매 반기 말 기준 부채비율을 산정하여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미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공통사항은 3개 SO에 대해 시청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 상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주)딜라이브 우리케이블티브이에

대해서는 방송매출액 대비 지역채널 투자 실적 및 계획이 저조하므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별도로 권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안건의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티브로드 중부방송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사업자는 '16년도 11월 11일에서 '17년 1월 27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개사로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과사항입니다. '16년 10월 13일 미래부에서 (주)티브로드 중부방송 등 3개 SO 재허가 사전동의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16년 10월 31일 재허가 사전동의 관련 약식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약식심사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식심사위원회는 방송, 법률, 회계분야 등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여 미래부의 재허가 조건(안) 그리고 사업자 신청서 등을 검토하였고, 3개 SO 재허가에 대해 미래부가 부과한 재허가 조건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지역채널 활성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여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약식심사위의 의견제시 내용, 미래부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주)티브로드 중부방송 등 3개 SO 재허가는 '조건부 동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의결주문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미래부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회가 유료방송사업자 사전동의를 하는 것은 방송의 공적책임 그리고 공공성 구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우리가 심사하는 항목도 거기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이씨엔올산중 앙방송에 대해서 지역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계획을 확대해서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자세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3개 SO의 지역채널에 대한 투자계획을 보면 3개사가 각기 다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방송 매출액 대비해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티브로드 중부방송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간 5.69% 정도 되고, 딜라이브 우리케이블티브이는 2.27%, 제이씨엔올산중앙방송은 3.94%가 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특히 제이씨엔올산중앙방송은 지역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비율이 낮고 또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부과했습니다만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티브로드 중부방송과 딜라이브 우리케이블티브이 같은 경우 매출액은 10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가입자 규모 같은 경우 딜라이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채널에 대한 투자계획 같은 경우 그 비율이 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별도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5년도 지역채널 투자 현황을 MSO들 평균적으로 봤을 때 1개 SO가 10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티브로드 중부방송은 약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제이씨엔올산중앙방송도 약간 오버가 되는 것 같고, 딜라이브 우리케이블티브이 같은 경우 다소 모자라지만 2021년까지는 9억원 정도로 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무래도 사업자의 공적책임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지역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지원과 지역 채널에 대한 투자는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가 사전동의를 하면서 이런 조건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이행점검은 위원회가 합니까, 아니면 미래부가 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미래부가 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미래부가 점검한 결과는 받아보게 되는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미래부에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아보는 상황은 아니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요청해서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래부에서 지금까지 SO들에 대해서 재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는 하지 못했고, 최근에 작년 정도부터 해서 전체 재허가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래부는 자기 관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재허가 조건이나 권고사항 이행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미이행할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이행하라는 명령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한번 이렇게 사전동의하고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점검했을 때 우리의 허가동의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것이 만약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미래부와 협의하는 것 외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MSO들이 쉽게 말하면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채널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컨대 지금 우리가 조건을 부과하고 또 미래부가 조건을 부과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건을 제대로 이행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부과한 조건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지 않으면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미래부와 잘 협의하고 점검해서 그 점검결과도 우리가 받아들 수 있도록 협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미래부와 협의를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미래부에서 과거에 조금 실적 점검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아주 면밀하게 실적 점검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요. 미래부에서 점검결과를 저희가 받으면 그냥 단기적으로 자료를 활용하지 말고 그것을 보존했다가, 결국에는 이 SO들의 허가 기간이 3년 내지 5년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후에 또 재허가가 들어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때에 그것이 체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미래부에서 받지만 그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음 심사 때에 이런 자료들을 잘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딜라이브 우리케이블티브이를 보면 방송구역이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기·인천지역이네요? 지적이 안 된 것을 보면 이 방송의 재무구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재무구조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미래부의 재허가 조건을 보시면 딜라이브 우리케이블티브이 같은 경우에도 재무구조상 약간 부채비율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부에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213,000 가입자인데, 왜냐하면 경기·인천지역 방송구역이면 지상파로는 OBS가 있고, 지금 OBS가 매우 재무구조가 안 좋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케이블TV는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영상태가 나은 것인지, '지역채널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는 재허가 조건인데 지금 이야기한 딜라이브 우리케이블티브이의 경우에는 권고사항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 케이블TV는 지역성,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콘텐츠는 너무 취약하다는 이야기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자들에 대비해서 방송매출액 대비 투자비율 같은 것들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취지에서 권고사항을 붙였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미래부의 조건나 권고사항에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았고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미래부에서는 지역채널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건이나 권고사항은 붙이지 않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우리 사전동의 심사에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케이블TV의 경우 특히 방송구역, 거의 독점적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지역성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공동체와 밀착해야 하고 그 지역 문화권에 기반한 콘텐츠를 많이 실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약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제대로 넣었는데 이행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미래부가 이렇게 재허가 하는데 우리가 사전동의하고 이런 제도를 시행한 것이 한 3년 반 됐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게 하면서 관련법령에 보면 방송법 제9조, 제10조 나와 있는데 미래부하고 방통위하고 우리가 사전동의할 때 어떤 프로세스에 관한 실무적인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SKT·CJ 합병 건 관련한 사전동의 부분을 논의하면서 구체적으로 방통위, 미래부 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재허가 기간에 있어서도 어떤 기간을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여기 제10조 제1항에 심사사항이 일곱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미래부도 일곱 가지 심사사항을 다 심사하고, 우리 방통위도 사전동의라는 그런 차원에서 또 그것을 다 리뷰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 있

는 것 아닙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지금 결국 허가조건이나 권고사항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내는 것 같은데 미래부의 허가조건(안)과 우리 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주로 지역채널 이야기하고 공익채널, 복지채널 이런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일곱 가지 심사사항 중에서 이번 경우에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 방통위는 그냥 은연중에 우리가 지상파, 종편, 보도PP 이것을 관장하다 보니까, 미래부는 유료방송,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이렇게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내지는 지역성을 염두에 두고 주로 그것을 보는 것인지, 또 그런가 하면 울산방송은 재무건전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고, 미래부는 다른 두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내지는 대출을 어떻게 하고 담보를 어떻게 하고 이런 조건을 붙이는데, 우리가 정작 허가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에 울산방송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나 하면 2개 부처가 사전동의라는 그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서 절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허가 신청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혼선이 올 수도 있고 우리는 여기 일곱 가지 심사사항 중에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보고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제 말씀은 뭔가 양 부처의 허가조건이라고 내지는 권고사항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제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짜임새가 없어 보인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곱 가지 사항 중에 미래부는 주로 어떤 사항을 심사하고 우리는 어떤 사항을 심사하고 이것은 굉장히 기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동의할 때 허가조건이나 권고사항 없이도 동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하여튼 관행적으로 계속 조건을 넣어야 된다, 그런 또 선입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등등해서 제 생각에는 두 부처가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심사하는 내지는 우리도 사전동의라는 차원에서, 또 사실상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을 3년 이상 운영해 보았으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이야기한 것인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꼭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것만 보는 것은 아니고, 이번 건도 보시면 재무구조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여야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적책임이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미래부에서 다양한 조건들을 많이 붙이지만 미래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부족했다거나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붙여서 미래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래부가 부처간 협의를 하게 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방송사업자에 대한 관할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방통위의 주 관심사항은 뭔가 우리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 신 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부가 검토한 것을 전부 타당한지 우리가 다 검토한다, 그것도 적절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국내 실정법상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보기도 하고 해외사례도 그런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좀 보고 결국에는 허가신청인이 봐서도 정부 전체에서 재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되게 체계적이고 짜임새가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사전동의 과정에서 무엇을..., 아니 제 느낌입니다. 우리는 케이블TV가 전체 그림이 어떤지 모르고 우리는 맨날 오면 지역성, 공익성, 공적책임 이것만 생각할 것인지, 포인트가 뭔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또 지자체 의견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합동으로 심사를 해 버리든지, 제가 다른 의견은 없는데 그냥 오늘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미래부하고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허가조건(안) 보면 서로 내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찌 보면 지금 방송사업자들을 누가 재허가·재승인을 해 주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장기적인 개선과 단기적인 개선으로 봐야 되는데 단기적인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일단 한번 검토를 하면서 우선 미래부 심사와 우리의 심사 사이에 중복, 비효율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기 위한 심사절차를 세 그룹 정도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절차를 취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한 차원 더 올라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 혼자 검토를 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 지금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유료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논의하고 1차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라도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현재 어떤 방향을 정해 놓고 가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도 덜 되어 있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안건 자체는 아니고 최근에 활동 관련해서 지난주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유료방송 활성화 자문위원회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안에 대한 공청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유료방송 발전연구반 안에 대한 공청회였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지요. 거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권역의 확대 내지는 전국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표준 같은 경우도 케이블이나 IPTV나 위성방송이나 서로 이렇게 그 기술들을 서로 쓸 수 있도록, 즉 매체의 특성이 사라지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는 방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한 유료방송 활성화 방안, 물론 법적으로 명확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의견을 받아야 할 것이 있을 텐데 권역확대 내지는 권역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 같은 경우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미래부에서 연구반 의견을 가지고서 공청회를 하기보다도,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지금은 연구반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정책 방안을 발표할 때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구현하려면 법이나 시행령 관련된 규정들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의 각 단계별로 당연히 방통위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협의하고 있고 미래부에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유료방송 발전방안이 어느 정도 정립되면 부처에 협의하고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그 과정에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오늘 갑자기 물어본 이유가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 일정을 당겨서 빨리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협의해야 할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따로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그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꾸 협의한다고 하고 쪽 이야기하는데 협의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의견을 내고 있습니까? 회의에 우리 방송정책국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지금은 나온 것이 미래부가 운영하는 연구반의 결과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한 것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미래부의 의견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지금 신 과장이 이야기한 협의라는 것은 그쪽에서 미리미리 저희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연구반에서 연구한 결과를 논의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에게 알려오고 저희들이 의견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생각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더 이상 코멘트는 안 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시장이다, 방송시장은 유료방송하고 크게 지상파, 종편 이렇게 나뉘었다 하더라도 방송시장 전체를 보면 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신시장을 이야기합니다. 기간, 부가, 별정 있으면 기간은 어느 부처 담당이고, 부가는 어느 부처 담당인데 이것이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야 아까 사전동의도 똑같은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소위 말하는 공동작업이 잘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냥 각각 자기 의견 내고 이렇게 합쳐서 조건을 낸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되게 이상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유료방송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가 되더라도 다 되어서 의견받는 것과 실제로 이렇게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만 이 안전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안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나.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2016-61-223)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두산인프라코어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2개 법인을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되 아래의 허가조건을 부과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서 금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9월 허가신청 공고·접수한 결과,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개의 법인이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후에 허가신청을 취하한 1개 법인을 제외한 4개 법인에 대해서 아래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허가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산인프라코어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적격'으로 그리고 아트엘비에스와 하나씨티피는 '부적격'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허가 심사결과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지난번에 저희가 제도 개선한 이래로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가능한 한 신속하게 허가를 받아서 사업에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11월 11일 금요일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6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43분 폐회 】